

차세대 반도체 혁신공유대학의 업무 약정서

차세대 반도체 혁신공유대학 개설 교과목 강의자(이하 <강의자>라 한다)와 차세대 반도체 혁신공유대학 사업단(이하 <사업단>이라 한다)은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의 제공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.

제1조 (목적)

본 문서는 <사업단>이 <강의자>에게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(이하 '이러닝콘텐츠'라 한다)를 제공하고, <강의자>가 이를 이용하여 강의를 수행함에 있어, 합리적인 업무 규칙, 의무와 책무, 존중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서로의 이익과 명예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본 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,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관습에 따라 해석한다.

1. '이러닝콘텐츠'(이하 <콘텐츠>라 한다)라 함은 <이러닝(전자학습)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> 제2조 제2호 규정의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·문자·도형·색채·음성·음향·이미지·영상 등의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.
2. '서비스'라 함은 <강의자>가 온라인상 접속 가능한 단말기를 통해 학생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육 행위를 말한다.
3. '시스템'이라 함은 서비스를 위하여 <강의자> 및/또는 <사업단>이 운영하는 플랫폼(웹사이트를 포함한다)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.
4. '이용자'라 함은 차세대 반도체 혁신공유대학이 제공하는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말한다.

제3조 콘텐츠의 제공

- ① <사업단>은 콘텐츠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<강의자>에게 콘텐츠를 제공한다. 단, <사업단>은 필요에 따라 시스템을 매개하지 않고 이메일, 파일 링크, 기타 전자적 전송 방식으로 콘텐츠를 <강의자>에게 제공할 수 있다.
- ② <강의자>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방식 또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공받고,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. 단,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.

제4조 (<강의자>의 의무)

- ① <강의자>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서 콘텐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<강의자>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.
- ② <강의자>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콘텐츠의 미리 사용 등 콘텐츠의 제공 및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<사업단>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5조 (<사업단>의 의무)

- ① <사업단>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.
 - 1. 콘텐츠 유지보수 및 <강의자>의 개선 요청사항 처리.
 - 2. <사업단>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학습 장애요소 및 불만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.
 - 3. 콘텐츠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질문사항 처리.
- ② <사업단>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당성을 관리해야 한다.

제6조 (서비스의 범위)

- ① <강의자>의 서비스는 제1조의 목적에 맞는 교육 행위로 그 범위를 제한한다. 단, <강의자>가 제3의 매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<사업단>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② 제1항에서의 매체별 서비스 제공시기에 대해서는 <사업단>의 동의를 얻어 <강의자>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제7조 (출처의 표시와 동일성 유지)

- ① <강의자>는 콘텐츠를 이용함에 있어 <사업단>이 콘텐츠를 제공할 때 표시된 콘텐츠의 출처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. 단, <사업단>의 동의를 얻거나 콘텐츠의 출처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<강의자>는 콘텐츠의 동일성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. 단, <사업단>의 동의를 얻거나 교육관행상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8조 (비밀유지)

- ① <강의자> 및 <사업단>은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와 부수적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.
- ② 제1항의 의무는 약정 기간이 종료된 후 3년간 유효하다.

제9조 (약정 기간 및 갱신)

- ① 본 문서의 약정 기간은 약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. 단, 약정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에 의한 약정 종료 또는 약정 조건의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, 본 문서는 1회에 한하여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- ② 제1항의 1회를 초과하는 갱신의 경우,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별도의 문서로 정한다.

제10조 (내용의 변경)

<강의자>와 <사업단>은 본 문서에서 정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, 상호 합의하에 변경하거나 보완한다.

제11조 (라이선스)

<강의자>가 본 문서에 의하여 <사업단>으로부터 취득하는 제12조 제1항의 라이선스 권한은 콘텐츠를 온라인 방식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목적으로 콘텐츠를 복제하고 시스템을 통해 전송할 수 있는 권리

및 이 권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다.

제12조 (권한 및 보증)

<사업단>은 콘텐츠에 대해 라이선스를 제공할 권한을 보유하며, <강의자>는 본 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사용할 라이선스 권한을 보유한다.

제13조 (교육적 목적의 지식 공유)

<사업단>은 제11조가 정한 <강의자>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한 제1조의 목적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적 목적의 공유를 위하여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 권한을 제3자에게 허락할 수 있다.

제14조 (정보의 제공)

- ① <강의자>는 제3자가 본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안 때에는 <사업단>에게 그 정보를 제공한다.
- ② <사업단>은 <강의자>에게 제1항의 정보 제공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다.

제15조 (기술적 보호조치)

<강의자> 및 <사업단>은 <사업단>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 및 <강의자>의 콘텐츠 사용 권한을 상호 보호하여야 하며, <강의자>는 <사업단>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.

제16조 (약정의 실효)

- ① <사업단>이 해체되면 본 문서의 약정은 실효된다.
- ② <강의자>가 혁신공유대학 개설 교과목을 강의하는 권한을 상실하면 그 <강의자>에 대해 본 문서의 약정은 실효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실효는 제9조 제1항의 약정 종료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.

제17조 (약정 종료의 효과)

- ① 약정이 종료되면 본 문서가 규정하는 권리 의무 관계는 모두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종료의 효과는 제8조 제2항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.
- ③ 본 약정이 종료된 경우에 <강의자>는 콘텐츠와 관련되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<사업단>에게 반환(그 자료가 전자적 파일이라면 자료 목록으로 대체될 수 있다)하고, 해당 파일을 삭제해야 한다.
- ④ 정당한 권원을 가진 이용자가 시스템을 통해 <사업단>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시스템에서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다.

제18조 (손해배상)

- ① <강의자> 또는 <사업단>이 본 약정이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약정을 위반함으로써 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② <사업단>이 제공한 콘텐츠를 <강의자>가 제6조가 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함으로써

제3자와 법적인 분쟁으로 말미암아 <강의자>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<사업단>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단, <강의자>가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9조 (기타)

- ① 본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.
- ② 본 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 단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.

당사자들은 상기 모든 조항을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8부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서명 또는 직인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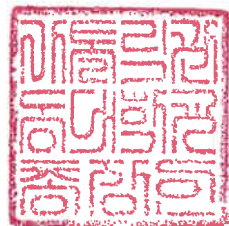
2023 년 1 월 4 일



강원대학교 총장 김현영



가톨릭광주대학교 총장 권한대행
윤만용



강릉원주대학교 총장
반선섭



상지대학교 총장 직무대행
유만희



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총장
권명중



한라대학교 총장
김용권



한림대학교 총장
최양희

